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중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868
----------	-------

발의연월일 : 2026. 3. 30.

발 의 자 : 진중오 · 박정훈 · 김용태
이양수 · 김상훈 · 이만희
최형두 · 최은석 · 배준영
안상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하여금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등을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금지하는 등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게임업체 내부 직원들이 게임 아이템을 부정하게 생성하거나 게임의 프로그램 운영 정보를 유출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등의 문제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관련 정보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수행 시 지켜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누구든지 게임운영정보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

조제2호의2, 제31조의3 및 제31조의4 신설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게임운영정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게임의 개발이나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된 정보

나. 게임과 관련된 서버·보안체계의 개발·제공·운영과 관련된 정보

다. 게임의 아이템이나 프로그램의 운영 체계와 관련된 정보

제5장제1절에 제31조의3 및 제31조의4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3(내부통제기준)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며 게임 관련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원 및 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4(게임운영정보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게임의 아이템이나 프로그램의 운영 체계와 관련된 정보를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게임운영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 게임물의 개발 등에 따라 게임운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자가 게임운영정보를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공개하는 행위
3. 미공개 게임운영정보를 권한 없이 유출·공개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5.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유출된 정보임을 알면서도 이를 사용·공개하는 행위
6. 게임운영정보를 권한 없이 생성·변경하는 행위

제45조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제31조의4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48조제2항제7호의2를 제7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3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2. (현행과 같음) <u>2의2. “게임운영정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u> <u>가. 게임의 개발이나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된 정보</u> <u>나. 게임과 관련된 서버·보안체계의 개발·제공·운영과 관련된 정보</u> <u>다. 게임의 아이템이나 프로그램의 운영 체계와 관련된 정보</u> 3. ~ 11. (현행과 같음) <u>제31조의3(내부통제기준)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며 게임 관련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원 및 직원이 직무를수행할 때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u>
3. ~ 11. (생 략) <u><신 설></u>	

<신 설>

한다.

②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4(게임운영정보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게임운영정
보를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게임운영정보를 사용
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
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
위

2. 게임물의 개발 등에 따라 게
임운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이 있는 자가 게임운영정보를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
공개하는 행위

3. 미공개 게임운영정보를 권한
없이 유출·공개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의2. (생략) <u><신설></u> 4. ~ 11. (생략) 제48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7. (생략) <u><신설></u> 7의2. (생략) 8. (생략)	<u>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소개</u> <u>· 알선·유인하는 행위</u> 5. <u>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유출된 정보임을 알면서도 이를</u> <u>사용·공개하는 행위</u> 6. <u>게임운영정보를 권한 없이</u> <u>생성·변경하는 행위</u> 제45조(벌칙) ----- ----- ----- -----. 1. ~ 3의2. (현행과 같음) 3의3. <u>제31조의4제1호부터 제6</u> <u>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u> <u>는 행위를 한 자</u> 4. ~ 11. (현행과 같음) 제4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7. (현행과 같음) 7의2. <u>제31조의3제1항을 위반하</u> <u>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u> <u>아니한 자</u> 7의3. (현행 제7호의2와 같음) 8. (현행과 같음)
--	--